

전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2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7. 3. 30.

판결 선고2017.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전주지방법원 2013. 9. 24. 접수 제79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소외 유한회사 D(주소 : 전주시 완산구 E, 1층, 이하 'D'라 한다)에게 2013.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39호로, '피고인(원고)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노99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 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을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3. 7. 2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임대, 리모델링, 매장입점 등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일부, 4층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일부, 4층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대위채권

D는 2013. 3. 2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D는 소유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3.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D는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 채권자대위청구

D, 피고 C는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컨설팅용역계약서)은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일부, 4층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D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국

판사항윤정

판사김주완

별지